심 사 보 고 서

【남양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 안 번 호	444

2024. 6. 11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5. 31. / 김지훈(국) 의원 등 9명

나. 회부일자 : 2024. 5. 31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6. 11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신체적 장애, 경제적 어려움, 지리적 위치 등으로 인해 독서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, 독서 연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신설하여 우리시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을 위한 규정을 신설 (안 제3조, 안 제4조의2)

○ 독서 연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 신설(안 제4조제3항)

○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시 기념품 등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(안 제4조제4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○ 본 조례안은 우리시 공공체육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안건입니다.

체육시설의 경우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격렬한 활동을 하므로 응급조치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으나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는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만 해당되어 우리시 공공체육시설 144개소 중 69개소에만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실정에서
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생활체육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, 안전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· 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　　음

6. 심사결과

○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　음

붙임 : 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1부.